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제정 2021.12.31

## 1. 목적

대/중소기업간 거래 관계에 있어 우월적 교섭력 남용을 방지,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을 통해 관계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을 실행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 1)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기준

지명경쟁계약을 지향하며 내부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명경쟁계약이 아닌 여타의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 ※ 계약체결방식의 종류

가. 수의계약: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계약

나. 일반경쟁계약: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계약

다. 제한경쟁계약: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한 후 낙찰자 계약

라. 지명경쟁계약: 입찰 참가자를 지명,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 계약

단, 아래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①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하기가 어려울 경우
- ② 해당 구매품의 공급업체가 단일 업체인 경우
- ③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고시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물품을 매입 할 경우
- ④ 발주자(고객)가 지정한 업체
- ⑤ 적극적인 기술 협조나 경쟁력 있는 사전 견적제시로 회사의 수주에 현저히 기여한 업체
- ⑥ 단가 계약된 업체와 계약을 연장 할 경우
- ⑦ 특정 업체가 자체 개발한 제품을 계약 할 경우
- ⑧ 특정 회사만 수행 할 수 있거나 안전 확보, 긴급공사, 영업비밀보호, 지역발전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 ⑨ 타사 공동 구매로 가격인하, 비용절감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 ⑩ 3회의 재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 ⑪ 기타 계약의 성질 및 목적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 될 경우

### 2)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 제도운영

가.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는 웹페이지(<https://www.hansol.com>)상의 구매담당자를 통해 제안이나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개진 할 수 있다.

### 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구축

가. 협력 업체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협력 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협력 업체 간담회를 주선하여 협력사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을 지원한다.

### 3. 자기 결정권이 보장된 계약 체결

1) 계약 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가. 서면의 사전교부

- ①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납품을 위한 작업 착수 전에 기명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 ② 계약서에는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 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 ③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도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 합의서를 교부한다.
- ⑤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 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나.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 ①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 ③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 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 ④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 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 ⑤ 임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율을 책정한다.
- ⑥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 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고, 단가 변경의 사유, 협의기간, 대금 지급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다

다. 명확한 납기

- 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기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② 계약 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 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해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

- ③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라. 객관적 검사기준

- ① 납품 물품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 ② 인도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 ④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중의 발주 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 마. 합리적인 대금 지급 기일 결정

- ①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 물품 등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 ②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일)이내에 지급한다.
- ③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 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일)이내에 지급한다.
- ④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 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만 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한다.
- ⑥ 납품 물품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완성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완성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⑦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 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 일을,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 전송 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 대금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 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한다.
- ⑧ 납품 물품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완성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 물품 등의 수령 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⑨ 대금을 납품 물품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바. 납품 등 이후 발견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처리

- ① 하자 원인 규명주체, 하자 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 처리한다.

사. 계약 해제, 해지

- ①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 ②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③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 해지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인도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인도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아. 기술자료 임치 제도

- ①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임치하게 하는 '기술자료임치제도'를 도입, 이용한다.

자. 수시 발주에 대한 개선

- ①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 해소를 위해 위탁물량 예고제를 실시한다

※ 계약 체결시 지양사항

가. 서면 미교부, 미보존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및 개발 의뢰 행위

라.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

마. 추가 공사비 미반영 행위

바.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미조정 행위

사.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미조정 행위

아.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자. 민원 처리 일방적 전가행위

차. 부당특약행위

#### 4.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가.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나. 단가 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다. 계약 변경에 따른 대금조정

2) 계약 이행시 지양사항

가. 부당한 수령 거부 행위

나. 부당반품행위

다.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라.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행위

마.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 행위

바. 부당한 대물 변제 행위

사. 보복조치행위

아. 탈법행위

자. 물품 등의 구매강제행위

차. 물품 구매 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행위

카. 기술자료제공강요행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포함)

#### 5. 계약 체결 실천사항의 기대효과

1) 시혜적 시각에서 동반자적 시각으로 전환효과

2)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효과

#### 부 칙

이 실천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